

고성군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91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19 고성군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5. 19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5. 5. 25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사유

-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엑스포 추진을 위한 소요되는 경비와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법인의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재단법인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뿐만 아니라,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고성군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5조)
- 나. 재단법인의 주무관청(경상남도)에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토록 하고, 매 회계연도 종료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알 보고하도록 함.
(안 제5조의 3)
- 다. 원활한 엑스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“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”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04. 9. 14 「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」를 제정 공포하였으나, 2004. 9. 2 경상남도 (법무담당관)에서 자치법규 개선 지도사항 통보에 의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내용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은 물론 재단법인의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고성군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재단법인의 매회계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,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,
- 또한 원활한 엑스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은 물론 물품에 대하여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련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개정조례안 제5조의3 제1항에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출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되고 제5조의 제목 “출연금등의 지원”을 현행대로 “출연금”으로 수정하고 본문 내용도 현행대로 수정함이 옳다고 보는데 ?
- 답 :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

- 안 제5조의 제목 “출연금 등의 지원”을 현행대로 “출연금”으로 수정하고 본문내용도 현행대로 수정

8. 심사결과

- 2005. 5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

붙임 :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부.